

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

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제4항 및 제74조,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4월 1일



1. 공 고 명 :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2. 4. 1. ~ 4. 17. (16일간)
3. 게시장소 :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법적근거 : 「도로법」 제61조, 제73조, 제74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, 제3조
5. 행정대집행 대상 현황

점용자	점용장소	지장물의 종류	점용면적	대집행방법	비고
미상	영동읍 계산리 912 (영동세무서 옆)	구두수선점포	3㎡	군 자력집행	

6. 송달내용

- 가. 도로법 제73조제4항,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**2022.4.18. ~ 4.19.(2일간)**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으며,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(☎043-740-350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